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78호
- 나. 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(찬성자 20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4년 8월 8일
- 라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2020년 12월 8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임의단체 형태였던 서울시체육회가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됨.
- 민선으로 선출된 체육회는 자율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이 부족한 실정이었음.
- 최근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 등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규정이 신설되었음.
- 이에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(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포함) 등에 대한 재정적 근거 기반을 확보하여 시민 대상 체육진흥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제6항)
-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(안 제18조 제7항)
-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, 또는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인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 제8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 및 수익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개정의 타당성

- 동 조례안의 관계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조항이 “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,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” 개정되어 2024년 9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<관련법령>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 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,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다만,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“특정기관에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도록 특례를 두는 경우에는 타 기관·단체의 공익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지역주민의 동등한 이용기회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,

적용대상으로 규정한 ‘지방체육회 사업’은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사

업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범위가 불확실하여,

공유재산 관리 처분 시 그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감면 등의 특례 적용이 광범위하게 행사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,

공유재산 관리·처분에 대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기보다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또한 그 밖에 ‘지방체육회는 운영비와 사무공간의 대부분을 지방비와 공유재산에 의존하여 국유재산 특례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다는’ 우려의 의견도 있었음.

- 상위법령 심의과정에 논란은 있었으나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,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여 근거를 더욱 견고히 하는 등 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안 제18조 제6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‘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’ 규정함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지원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지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</u>

- 공유재산의 위탁 운영 대상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있으며 독립법인으로 설립(2021.5.)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 대상이 될 것임.¹⁾
- 서울시체육회 2024년도 총 예산은 713억원으로 시보조금이 약 72%인 515억원을 차지하며 그 외 국비(55억, 72%), 자체기금(102억, 14%) 등이 포함됨. 시보조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으며 자체 수익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.
- 서울특별시체육회는 각종 체육시설 수탁 공모 및 수탁시설 운영업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체육시설팀(임시기구/TF팀)을 신설(2024.2.)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임.
- 체육회가 관리 위탁할 공유재산은 특정할 수 없으나 시립체육시설 중 민간위탁시설은 잠실야구장(LG·두산), 효창운동장(서울시축구협회),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서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서울특별시체육회 법인이 설립(2021.5.)되었으며 현재 민선2기(2023.2~2027.2.)가 출범된 상황임.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로 법인화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운영중임.

목동빙상장(와이키키 신사점), 산악문화체험센터(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·마포구체육회)가 있으며, 그 밖에 신규 건립 중(문정역사 체육시설, 어울림체육센터)인 체육시설과 구립 체육시설이 다수 있음.

- 그 밖에 동 조례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, 조례를 따르도록 함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<신설>	⑦ 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-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법인화된 서울시체육회의 자생력을 키워 지방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서울시체육회가 추진하는 시민대상 체육진흥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 같은 조 제8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,

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함.

전문위원	임창균(2180-8113)	입법조사관	박지혜(2180-8115)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의안번호
1978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이종환 의원 (보건복지위원회)	2024. 8. 8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제안이유> ○ 체육회의 자율성 및 재정적 근거기반 확보를 위해, 최근 개정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, 市체육회·장애인체육회 등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을 규정				
	<주요 입법 요지> ○ 市체육회 등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 가능토록 하고,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도록 함(안 제18조제6·제7항) ○ 市체육회·장애인체육회 주최 경기·행사 및 市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(안 제18조제8항)				
추진경과	○ 2024. 8. 8. 조례안 발의(발의자 : 이종환 의원) - (찬성자) 김규남, 김원중, 문성호, 아이수루, 유정희, 이효원 의원 등 20명				
부 서 검 토 의 견	원안가결() / 수정가결(○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에는 동의함(안 제18조제6·제7항)				
	○ 다만, 안 제18조제8항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·제6조 및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해당되는 사항으로,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합함				
대응방안	○ 수정 필요성 등 협의	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남규하(☎2133-2677)	담당	방준흠(☎2133-2678)